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28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부합하는 정원조정,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,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증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,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게 행정직과 지도직, 기능직 등 총 4명을

감하고

-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2명을 증원 하였으며
 -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라 4명을 증원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과 임용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